

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21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-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“자동차규칙”이라 한다)」 중 충돌시험기준이 개정됨(‘22.10.26)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」도 개정 필요

2. 주요내용

가. 최고속도 40킬로미터 미만 자율차 안전기준특례(안 별표3 제4호)

- 최고속도 40킬로미터 미만인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규칙 제91조부터 제91조의4까지에 따른 충돌시험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 허용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(자율주행정책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의견(이유)

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6동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
- 전자우편 : kmanho@korea.kr
- 전화(☎) 044-201-4147 / 팩스 044-201-5587